

요약

- 정보의 활용을 제약하는 법적 장치 중 개인정보 보호가 주목받고 있는바, 법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① 개인정보 오·남용 및 감시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 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파생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법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있음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는 아니나, 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위탁”이 있는바,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개인정보의 제공, 전송이나 공동이용과 구별됨
-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은 정보의 제공과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 비용(Cost)이 절감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한 법령상 근거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장점이 있어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경우 사별로 수만 명에 달하는 수탁자를 두고 있음
- 최근 개인정보의 위탁에 대한 논의와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주식회사의 경우 당사자가 개인정보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개인정보를 미동의의 제공하고 국외 전송하였다 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제1심 판결에서도 패소한 상태임
- 보험회사와 소속 설계사의 관계를 개인정보 위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최근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회사의 고객 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해 제공이 아닌 위탁임을 전제로 한 금융위원회 결정이 있었음
- 법적 제도로써 개인정보 위탁에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법률관계의 실질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제3자 제공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위탁으로 인정되더라도 개인(신용)정보를 수탁한 자의 유출 등 사고에 대해 위탁자가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함

1. 개인정보의 보호 일반

가. 정보 공유의 가치와 개인정보의 보호

○ 디지털화된 정보로 이루어진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는 정보재(Information goods)는 비경합성(Non-rivalry) 및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진 공공재(Public goods)의 하나임¹⁾

-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대비하여, 정보를 손실 없이 복사함으로써 무한대로 증식될 수 있는 가치(價値)를 고려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또는 제공²⁾은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선(善)으로서 권장되어야 함³⁾

○ 정보의 공유·제공으로 인해 다른 가치가 침해될 경우 법은 이를 제한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가치를 표상하고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적 도구로는 지적재산권,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명예권⁵⁾ 등이 있고, 최근 개인정보의 보호가 주목받고 있음

- 정보의 처리자(Controller)가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일 경우, 그 정보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지, 명예에 관한 것인지 등 내용을 불문하고⁶⁾ 개인정보의 처리는 법에 의해 제한됨

나. 법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나 기업(이하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이 그 정보가 가리키는 자(이하 '정보주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결합하는 등 분석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이나 취향까지도 알아낸다면⁷⁾ 그 자체로 정보주체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⁸⁾

1) 권한호(2019), 「정보재의 특성이 집단지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재와 공공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3권 제2호, 한국공공관리학회, pp. 61~63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잘 알려진 일반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정식 명칭은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즉 "개인정보 처리 및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있어 자연인을 보호함에 관한, 그리고 95/46/EC 지침의 폐지에 관한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고 있음

3) 윤기열(202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이론과 실제 - 보험업을 예로 하여 -」, 『경영법률』 제36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p. 24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21 판결; 「[1709년 이전에는] 인류가 창조한 모든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자유롭게 이용하여 모방·확산시킬 수 있는 정보재(情報財)로서의 산물, 즉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 정보재는 본래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류 문명의 산물이다. … [그러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법률상의 독점요건을 구비한 한정된 정보재에 국한하여 국가가 개인의 독점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체계이다." 인용문 중에 [] 안의 표현은 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자가 삽입하였음. 이하 같음

5) "인격권(人格權)" 이론에 의해 설명하면, 자신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명예라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음(한수웅(2005),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한국, 독일과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비판을 겸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84호, 한국법학원, p. 23); 최근 법적 권리로서의 명예권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은 ① 명예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과, ② 형법상 비범죄화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음(윤기열(2022),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p. 32)

6)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7) 앨런 웨스트(Alan Westin, 1929-2013)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한 정보라도 원래 합의한 목적을 넘어 이용되거나 합의된 범위를 넘어선 사람에게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각각의 처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⁹⁾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¹⁰⁾

○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 처리 목적 내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악의적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위험한 자에게 자신의 신변에 대한 사정이 알려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체적 위협¹¹⁾이나 재산상의 피해¹²⁾ 등 파생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¹³⁾

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체계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 제1항)라고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의 지위에 있음을 명시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인위치정보), 「의료법」(환자의 개인정보) 등이 특별법의 지위에 있음
- 종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렸으나, 2020년 2월 4일 세 법이 동시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에 관한 규율은 삭제됨¹⁴⁾

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 상황을 ‘정보 감시(Data surveillance)’라고 불렀음(Alan Westin(2015), *Privacy and Freedom*, IG Publishing, p. 173 이하). 미국법상 프라이버시(Privacy) 개념은 우리 헌법상 ‘사생활’(제17조)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정종섭(2022), 『헌법학원론』 제13판, 박영사, p. 692를 참조 바람)

8)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경우 국민이 직면할 위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알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9)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3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가 있음

10)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등,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이 있음

11) 2022년 9월 14일,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수집하여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해당 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됨(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0638 판결)

12) A라는 사람이 B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자신이 B라는 사람인 양 행세하여 금융기관과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법적 처리에 대해서는 윤기열(2023),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 증가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 - 비대면에 의한 명의도용 금융상품 판매 문제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pp. 210~215 및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46074, 2020다246081 판결, 그 원심 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58238, 2019나58245 판결을 참조 바람

13)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의 법적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우고 있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4) 결과적으로 ‘데이터 2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윤기열(2021), 「개정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 보험업의 관점에서 -」, 『보험학회지』 제126집 21-4, 한국보험학회, p. 37, 각주 10

○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의2 제2항)라고 하여,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의 지위에 있음을 명시함

-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는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교집합¹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이자 개인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가리킬 때도 마찬가지로 함)인 정보의 처리에는 대부분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리라 생각할 수 있으나 늘 그런 것은 아님
- 예컨대 신용정보법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규율할 때에는 대부분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회사,¹⁶⁾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¹⁷⁾ 채권추심회사,¹⁸⁾ 신용정보집중기관¹⁹⁾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²⁰⁾를 말함; 제15조 제1항)을 주어(수범자)로 하므로(제15조, 제17조, 제32조, 제33조 등), 신용정보회사등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객체가 개인신용정보라 하더라도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되나, 그 타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바(제28조의8),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국외에 있는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어느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²¹⁾
-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고(제2조 제1호 가목), 신용정보법상 “개인식별번호”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하는바[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개인식별번호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제24조의2), 개인신용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그 오·남용 방지에 관하여는 어느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²²⁾

15)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규율을 현행과 같이 법률에서 정하게 된 것은 2020년 2월 4일의 개정에 의해서임.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규정의 개정 경위는 윤기열(2021), 「개정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 보험업의 관점에서 -」, 『보험학지』 제126집 21-4, 한국보험학회, pp. 36-47

16)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법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신용정보법 제2조 제5호), “신용정보업”이란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함(신용정보법 제2조 제4호)

17)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의3),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의2)

18)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의2),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

19)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하고(제2조 제6호),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있음

20)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7호), 보험회사는 이에 해당함

2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주식회사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애플 주식회사(Apple Inc.) 계열사인 Apple Distribution Limited(ADI)에 제공하기로 하고, 실제 2018년 4월 27일, 6월 5일, 7월 1일 및 2019년 6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 1회 누적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총 542억 건을 ADI로부터 관련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알리페이 사(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로 전송(국외 이전)한 사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미동의 제공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적용(제32조 제1항 위반)되어 2026. 1. 28.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129억 76백만 원을 부과했고, 같은 개인정보가 국외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제28조의8 제1항 위반)되어 2025. 1.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59억 68백만 원을 부과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카카오페이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53645 판결에서 기각되었음

22) 문언상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실무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를 적용함.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는데(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시 오·남용 방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음. 다만 유출로부터 방지하는 일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임

2.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및 수탁

가. 의의 - 검토 필요성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그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이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 법에 의해 규제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유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제2조 제2호),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처리”로 위 유형에 “결합”을 추가로 열거하고 있음(제2조 제13호)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제26조 제1항)를,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함(제17조 제1항)
-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²³⁾를 의미하는바, 문언상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처리의 일종이 아니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위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본질이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²⁴⁾하게 됨
- “위탁”에는 제도의 본질상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가 필요하고, 위탁되는 처리업무는 어떤 업무든 가능하나 실무상 수집·이용 업무가 보통 위탁되고 있음

○ 최근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을 둘러싼 논의와 검토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탁을 의도하였으나 행정청이나 법원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평가받는다면 “제공”의 요건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막대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에서도 이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함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업무는 실무상 자주 위탁되고 있고, 보험회사의 경우도 이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처리 권원(權原)의 유무나 유출사고의 처리 등의 주제에 비하면,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사례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음

나. 다른 유사 제도와 비교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제공”인바,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

23)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13793 판결

24)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13793 판결

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²⁵⁾ 또는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²⁶⁾를 말함

- 보통 물건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하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상실하고 제공받는 자가 이를 취득하게 되나, 정보는 속성상 손실 없는 복제가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새로 지배·관리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제공하는 자가 반드시 지배·관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실제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의 지배·관리권이 유지된 채 제공받는 자의 지배·관리권이 생성되는 것이 일반적임²⁷⁾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그 정보주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權原)이 필요하고, 이에 법률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의 근거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²⁸⁾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각종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어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다른 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된 경우 이를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으로 볼 것인지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볼 것인지는,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가 아니라 그 개인정보 이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실질에 달려 있음²⁹⁾

○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관한 규정이 다수 발견되는데,³⁰⁾ “처리”의 독자적 유형은 아니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수단임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이나 신용정보법(제33조의2)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특별하게 규율하는 것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신설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³¹⁾ 및 다른 나라³²⁾의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공통된 요건을 추출하면 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정보를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③ 정보주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로서, ④ 마이데이터 사업, 혹은 개인정보관리업의 육성과 관련이 있다고 요약됨³³⁾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와 수탁자의 법률관계인 반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정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p. 106

26)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13793 판결;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p. 106)

27) 전승재·최경진(2025),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 홀플러스 사건 및 카카오페이 사건을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29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p. 125

28)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신용정보법 제32조를 참조 바람

29)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13793 판결;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30) 그 의미는 ‘전류나 전파를 이용하여 먼 곳에 보내다’라는 의미(電送)로 볼 수 있음; 윤기열(2022),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pp. 257~258, 각주 541

31)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외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 「보험업법」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요청권) 등이 있음; 윤기열(2022),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pp. 271~294, 윤기열(202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이론과 실제 - 보험업을 예로 하여 -」, 『경영법률』 제36집 제2호, 한국경영법학회, pp. 245~269를 참조 바람

32) 필리핀 데이터 프라이버시법(Data Privacy Act of 2012), GDPR,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CCPA) 등이 있음; 윤기열(2022),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pp. 257~258, 각주 541, pp. 264~271

33) 윤기열(2022),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p. 259

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일본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위탁”과 구분되는, 우리 법제에는 없는 “공동이용(共同利用)” 제도를 두고 있고,³⁴⁾ 이는 GDPR의 ‘공동 처리자’³⁵⁾ 제도에 대응됨

-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은 “특정한 자와의 사이에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개인데이터가 당해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경우로서, 그러한 사실과 공동으로 이용되는 개인데이터의 항목,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의 범위, 이용하는 자의 이용목적 및 당해 개인데이터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하여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에는 개인데이터의 제공을 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7조 제5항 제3호)
-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을 개정하여 공동이용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고,³⁶⁾ 정부에서도 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 정보의 공유·활용을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공동활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³⁷⁾

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특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외에 정보주체로부터 추가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정보의 이전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제공의 경우)나 요청(전송요구의 경우) 등 참여(Participation)가 필요하지 않음³⁸⁾
- 다만 위탁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이 필요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 수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개인정보의 제공에 정보주체가 동의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자가 당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을 동의·요청하더라도 적절한 제공·전송이 될 수 없음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면 수탁자에게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수탁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음³⁹⁾

34) 공동이용이 쓰일 수 있는 사례로는 ① 그룹 기업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 시의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② 모자 형제회사 간에 취득 시의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데이터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③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사이에서 취득 시의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종업원의 개인데이터를 공동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個人情報保護委員会(2026),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 (通則編)』, p. 85

35) 공동 처리자(Joint controller)는 둘 이상의 처리자가 공동으로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를 말함(GDPR 제26조); 엄밀히 일본이나 EU의 개인 정보 제공, 위탁은 우리의 제공, 위탁과 요건과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36) 전승재(2022), 「개인정보 처리위탁, 제3자 제공, 공동처리자」, 『정보법학』 제26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p. 214 이하

37)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2026. 8.),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案)』, p. 12

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p. 206을 참조 바람

39)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5. 12.),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p. 92

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자의 책임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시에는 계약서 작성 의무, 공개 의무, 교육 및 감독 의무 등 행정상의 책임이 부과됨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함(제26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 재화·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5호, 제2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4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자는 수탁자의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됨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제26조 제7항)하므로,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39조) 또는 법정손해배상(제39조의2)을 부담할 수 있음(신용정보회사등이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라 배상책임 성립)

3.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례 검토

○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대출모집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긴급출동업체,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 현장 출동 업체, 의료자문의, 손해사정법인,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 등 수만에 달하는 법인·개인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음⁴⁰⁾

○ 대법원 판결 중에는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

- C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X가 설계사로서 알게 된 P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문제가 됨
- 대법원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등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40)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은 통상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A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26. 9. 30. 기준 설계사 62,127명, 대리점 4,950명, 긴급(고장)출동 560개 업체, 사고현장 출동 750개 업체, 의료자문의 115명 등의 수탁자를, B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026. 10. 6. 기준 “B 생명 컨설턴트” 2만여 명, 보험대리점 1,200여 명 등의 수탁자 명단을 게시하고 있음

당사자인 보험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 등 보험회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의 종국적 결정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다]”는 이유로 X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함

- 대법원 판결의 논지는 P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C 보험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것이고,⁴¹⁾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X는 C의 수탁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대법원은 X가 양벌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로서,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을 방론(傍論)으로 남김

○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보험회사에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2022년 5월, D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자회사인 E 보험대리점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2025년 7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 신용정보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과징금 1,400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⁴²⁾
- 신용정보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당시 D 보험회사의 매출액은 4조 7,500억 원으로, 3%인 1,425억 원이 과징금의 상한액임⁴³⁾
-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9일 정례회의(제재내용은 2026년 9월 18일 공개)⁴⁴⁾에서 D 보험회사는 과징금 70억 23백만 원 등의 제재를 받아, 금융감독원에서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처분을 받았는데, 제재내용에 따르면 D 보험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잘못(신용정보법 제33조 위반)⁴⁵⁾이 있다는 것임
- 금융위원회가 목적 외 이용에 대해서만 제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D 보험회사가 E 보험대리점에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한 것을 ‘제공’이 아니라 ‘위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판단근거는 제재내용에 실시되어 있지 않음),⁴⁶⁾ 목적 외 이용만의 불법이 미동의 제공의 불법에 비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현행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산정방식⁴⁷⁾은 법정상한액(전체 매출액의 3%)에 부과기준율(위반행위의 중대성에

41)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누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보유·운용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 보장의 요청에 잘 부합하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판결은 X의 책임만을 묻기 위한 공소 제기에도 대한 것이므로, C 보험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단은 아님에 유의해야 함

4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947071>

43)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5/08/14/PC3NMQALURGUZIAHBQ6K6K7C4E/>

44) <https://www.fss.or.kr/fss/job/openInfo/view.do?menuNo=200476&sdate=2026-01-01&edate=2026-10-07&searchCnd=4&searchWrd=&pageIdx=2&examMgmtNo=202200127&emOpenSeq=4>

45) 보도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이용기간이 끝난 보험계약자 1,639명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고 함; <https://www.the-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32>

46) D를 자문한 법무법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고 주장함; <https://www.bkl.co.kr/law/insight/case/4841>

47) 신용정보법 제42조의2 제4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3항 및 [별표 2의3], 「금융기관감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2]

따라 100%, 75%, 50%)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정하고, 이를 다시 조정하며 최대 50% 수준의 가중·감경을 한 후,⁴⁸⁾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유⁴⁹⁾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므로, D 보험회사의 경우 기본과징금의 조정까지 최대한 감경되었다면 356억 원, 과징금 부과 시 한 번 더 감액되었다면 178억 원 내외일 것임

- 법령에서 정한 것은 과징금의 ‘상한’이므로 조정된 기본과징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부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처분은 아님.⁵⁰⁾ 다만 현재의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산정 구조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GDPR에 비해 재량기준으로서 경직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⁵¹⁾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⁵²⁾
- D 보험회사가 과징금 처분을 다투려 한다는 보도는 보이지 않음. 2026년 10월 현재 F 보험회사와 G 보험회사도 자회사형 GA에 고객 정보를 이용하게 한 건으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바, 각 GA와의 법률관계가 D 보험회사와 비슷한 내용이라면 개인정보의 제공이 아닌 위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GA를 통한 개인정보의 이용이 애초의 이용 목적에서 어느 정도 이탈하였는지에 따라 감경 수준이 달라질 것임

4. 보험회사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 주의할 점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시 부과되는 행정상의 책임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흔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있는바,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기간”을 확인하여 실제 처리가 위탁 중인 기간 중 위탁 문서가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개인정보의 수탁자 목록을 등재하고, 수시로 현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수탁자 점검 및 교육, 위탁기간 만료 시 개인정보 파기 점검 등의 수행이 필요함
- 위와 같은 행정상의 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의 (미동의 제공이 아니라) 처리를 위탁한 것이라는 행변이 기각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⁵³⁾에 유의해야 함

48) 예컨대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금융기관감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2])

49) 예컨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 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음(「금융기관감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2])

50) 「금융기관감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2]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시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이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고 기본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한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 2026. 2. 6. 선고 2025구합53243 판결은 과징금의 액수가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6. 8. 20. 선고 2026누3778 판결에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음

51)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대성에 따라 1~90%, GDPR은 0~100%의 범위에서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음

52) D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전후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함: 금융위원회(2026. 9. 16.)자 보도자료,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 개최 -」; 이후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금융기관감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 아닌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정하기로 하여 규정변경을 예고하였는바(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75호), 이에 따르면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65% 이상 100% 이하, 30% 이상 65% 미만, 1% 이상 30% 미만으로 수정됨

53)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53645 판결에서 당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주장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련된 처분문서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개인정보 처리위탁자로서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 법률관계의 실질이 “위탁”에 해당해야 함

- 당사자가 “위탁”이라고 주장하며 처리위탁 문서의 작성, 처리방침을 통한 위탁사실 공개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업무가 위탁되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판례가 실시한 “위탁”의 실질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존재해야 함

○ 행정상 제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외에 제공을 위한 별도 동의가 면제되고,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가 (무단 제공 등에 비해) 적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장점이 있어 실무상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수탁자의 업무가 위탁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위탁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제재 받을 수 있음(위 D 보험회사의 사례 참조)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탁자의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가 적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위탁 제도의 이용 시 주의해야 함